

의안번호	제662호
의결 연월일	2014년 6월 일 (제330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2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및 수수료 납부방법 명확화(안 제5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수료를 수입증지 계기로 납부
- 수수료 면제 항목 변경 및 추가 (안 제6조)
 - 각급 학교장 ⇒ 학교의 장,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 수수료 및 검체 처리 규정 변경(안 제8조)
 - 제목 변경 :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 검체의 처리
 - 검체 ⇒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 경우)
-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별표 2)
 - 닭 : 6원/마리당, 오리 : 12원/마리당
- 상위법에 맞게 검사·시험성적서 내용변경(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7. 입법예고 사항

- 예고기간 : '14. 5. 2~5.22(특이 의견없음)
- 기간 종료후 : (사)한국계육협회 등에서 닭 도축 수수료 5원 요구
- 반영내용 : 닭 도축 수수료를 '15년 말까지 5원으로 하고 이후 6원으로 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내야 하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각급 학교장”을 “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를 “(검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된 검체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제출된 검체”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검체”를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도축검사 수수료 구분란 제3호 닭의 수수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5원으로 한다.

[별표 2]

도축검사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3,000	마리당
2. 돼지, 양(염소)	1,000	마리당
<u>3. 닭</u>	<u>6</u>	<u>마리당</u>
<u>4. 오리</u>	<u>12</u>	<u>마리당</u>
5. 가축 외의 동물	1,000	마리당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발급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제 목 : 검사·시험성적서

1. 접수번호 :

2. 우리연구소에 의뢰한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소명 및 소재지 :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

다. 제 품 명 :

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마. 제조일자(유통기한) :

바. 검사목적 :

사. 검사결과 :

검사항목	기준	결과	판정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장

검사담당자 : 성명 ○○○ ☎ 043-220-6○○○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시료에 한하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u>별표</u>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u>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내야 하고</u>,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p> <p>< <u>신 설</u> ></p> <p>제6조(수수료 감면) ① (생략)</p> <p>② 도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의장, 유치원장, <u>각급학교장</u>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에 따라 <u>제출된 검체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u>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u>검체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u> 한다.</p>	<p>제5조(수수료) ①<u>별표 2</u>.....</p> <p>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6조(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검체의 처리) <u>제출된 검체</u> 다만, <u>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u>를.....</p>

관련법령 발취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30.>
-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제11조제1항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30.>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제12조제1항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시행일 : 2014.7.31.] 제12조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8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11. 삭제 <2013.7.30.>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시행일 : 2014.7.31.] 제4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

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4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이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업무가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비용발생요인

- 각 닭·오리 도축장 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검사관실 운영에 따른 실험실 장비,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소요비용

3. 관련조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검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검사 수수료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부터 시행되므로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또한, 1년치 도축마리수 기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추계 결과

- 개정법에 따라 닭·오리의 도축에 필요한 검사관 및 검사원을 배치할 경우, 5년간 인건비는 약58억2백만원이 소요되고, 시험장비·사무장비 구입비 및 소모품의 비용은 약4억6천1백만원이 소요되어, 총 62억6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62억5천6백만원이 예상된다.
- 따라서, 5년간 총비용에서 총수입 금액을 빼면 손익은 △6백9십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재원조달방안

- 인건비 : 검사관(도비 100%), 검사원(국비 60% 도비 40%)
- 실험장비구입비 : 국비 50% 도비 50%
- 사무장비구입비 : 도비 100%
- 소모품구입비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1)

6. 작성자

축산위생연구소 위생검사과 과 장 김 창 섭
시험검사팀장 최 필 규

(043-220-6251, pilgyu6867@korea.kr)

붙임 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1,167,600	1,210,200	1,254,600	1,293,000	1,330,800	6,256,200	
닭 수수료	898,800	925,800	953,400	982,200	1,011,600	4,771,800	
오리 수수료	268,800	284,400	301,200	310,800	319,200	1,484,400	
세출	1,108,433	1,237,332	1,330,264	1,267,064	1,320,064	6,263,157	
검사관인건비	705,000	741,000	777,000	816,000	857,000	3,896,000	
검사원인건비	359,000	370,000	381,000	392,000	404,000	1,906,000	
시험및사무장비	34,600	91,200	113,200	0	0	239,000	
소모품비	9,833	35,132	59,064	59,064	59,064	222,157	
재원조달	1,108,433	1,237,332	1,330,264	1,267,064	1,320,064	6,263,157	
의존 재원	소 계	1,108,433	1,237,332	1,330,264	1,267,064	1,320,064	6,263,157
	보조금	1,108,433	1,237,332	1,330,264	1,267,064	1,320,064	6,263,15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타(차입금,민자, 예비비 등)							